

www.naqs.go.kr

희망찬 농장, 안전한 식탁, 건강한 대한민국!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2023. 12.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1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                                                     |           |
|-----------------------------------------------------|-----------|
| <b>PART 1 공통사항</b>                                  | <b>06</b> |
| Q1.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06        |
| Q2.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06        |
| Q3.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                              | 06        |
| Q4. '외국산'을 '수입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 06        |
| <b>PART 2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b>                         | <b>07</b> |
| Q1.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 07        |
| Q2. 국산 농산물로 생산 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는?              | 07        |
| Q3.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 07        |
| Q4. 동일 품목의 국산(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는?              | 08        |
| <b>PART 3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b>                     | <b>09</b> |
| Q1. 국내 가공품 제조 시 원산지 표시는?                            | 09        |
| Q2.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 당류가공품이란?                         | 10        |
| Q3. 국내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 사용 시 원산지 표시는?                 | 10        |
| Q4. 표시 대상 3순위인 '발효식초(복합원재료)'내에 표시 대상 원료가 없을 경우는?    | 11        |
| Q5. 배합 비율 3순위가 '사탕(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표시는?             | 12        |
| Q6.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는?                             | 12        |
| Q7.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는?                      | 12        |
| Q8. 국산(국내산)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13        |
| Q9.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는?            | 13        |
| Q10. 제품명에 사용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14        |
| Q11.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할 경우 '농수산물의 명칭'이란?    | 15        |
| Q12.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16        |
| Q13.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16        |
| Q14.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를 할 경우 "등"을 생략해도 되는지?    | 18        |
| Q15.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18        |
| Q16.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 19        |
| Q17.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는?            | 20        |
| Q18.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 시, 혼합 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21        |
| <b>PART 4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b>                           | <b>22</b> |
| Q1. 통신판매의 범위는?                                      | 22        |

|                                               |    |
|-----------------------------------------------|----|
| Q2. 인쇄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는?                | 22 |
| Q3. 마트에서 제공하는 전단지의 원산지 표시는?                   | 23 |
| Q4.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는?                | 23 |
| Q5. 통신판매로 주문 받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원산지 표시는? | 23 |

## PART 5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 ..... 24

|                                            |    |
|--------------------------------------------|----|
| Q1.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가 미변경 되는 경우는?           | 24 |
| Q2.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가 변경 되는 경우는?            | 24 |
| Q3.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가 전환되는 경우는?             | 25 |
| Q4.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수확 판매 시 원산지 표시는? | 25 |

## PART 6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 ..... 26

|                                |    |
|--------------------------------|----|
| Q1.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 26 |
| Q2. 당류의 원산지 표시는?               | 26 |
| Q3. 주류의 원산지 표시는?               | 27 |
| Q4. 새싹채소와 어린잎채소의 구분 및 원산지 표시는? | 27 |

## PART 7 기타 사항 ..... 28

|                                          |    |
|------------------------------------------|----|
| Q1. 제과점영업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 28 |
| Q2.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 원산지를 스티커로 수정가능한지? | 28 |

## PART 8 원산지 표시방법 ..... 29

|                                                    |    |
|----------------------------------------------------|----|
| Q1. 농산물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 29 |
| Q2. 농수산물 가공품(수입, 반입, 국내 가공 포함)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 29 |
| Q3.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 30 |

# 02 음식점



## PART 1 공통사항 ..... 32

|                                       |    |
|---------------------------------------|----|
| Q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32 |
| Q2.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 32 |
| Q3. 음식점에서 원산지 일괄 표시는?                 | 33 |
| Q4. 음식점에서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34 |
| Q5. 음식점에서 동일 품목을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는?       | 34 |
| Q6.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는? | 36 |
| Q7.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 36 |
| Q8.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 등의 원산지 표시는?         | 37 |

|                                       |    |
|---------------------------------------|----|
| Q9.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는?           | 37 |
| Q10. 음식점에서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 세부기준은?      | 38 |
| Q11. 음식점에서 메뉴판,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40 |
| Q12. 태블릿PC를 이용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40 |
| Q13.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41 |
| Q14.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부착 위치는?  | 41 |
| Q15.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 42 |

## PART 2 음식점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 ..... 43

|                                 |    |
|---------------------------------|----|
| Q1.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 43 |
| Q2. 돼지·닭·오리·양 및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 44 |
| Q3. 쌀의 원산지 표시는?                 | 45 |
| Q4. 흑미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46 |
| Q5.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 46 |
| Q6.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는? | 47 |
| Q7. 배추김치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 47 |
| Q8. 콩의 원산지 표시는?                 | 48 |

## PART 3 상황별 원산지 표시 ..... 49

|                                                          |    |
|----------------------------------------------------------|----|
| Q1. 휴게음식점에서 냉동핫도그(빵류)를 구입하여 전자레인지에 데워 손님에게 판매 시 원산지 표시는? | 49 |
| Q2. 배달앱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50 |

## 03 행정처분 및 부정유통신고



|                                  |    |
|----------------------------------|----|
| Q1.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 52 |
| Q2. 원산지 미표시 세부기준은?               | 53 |
| Q3. 과징금 부과기준은?                   | 58 |
| Q4. 부정유통신고 방법은?                  | 58 |
| Q5.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는?                | 59 |
| Q6. 개인의 원산지 검정(판별) 의뢰 신청 가능 여부는? | 59 |

## 04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    |
|-------------------------------------------|----|
| Q1. 국산 농산물: 222품목                         | 62 |
| Q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 63 |
| Q3.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                        | 74 |

## 농산물 및 그 가공품

PART 1 공통사항

PART 2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PART 3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PART 4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PART 5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

PART 6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

PART 7 기타 사항

PART 8 원산지 표시방법



## Q1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자는?

-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업점 형태와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 대상 농축산물(가공품) 품목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

## Q2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알아두기

▶ 자세한 내용은 62~76페이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참고 하세요!!!

## Q3 ‘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

- » 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 알아두기

▶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였다고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됨

## Q4 ‘외국산’을 ‘수입산’으로 표시해도 되는지?

- » 2016.4.27.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개정으로 ‘수입산’이라는 표시 기준은 ‘외국산’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7.1.부터 의무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입산’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아니며,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Q1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 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예시

- ▶ 올바른 표시: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 ▶ 올바른지 않은 표시: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Q2 국산 농산물로 생산 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는?

- » 국산 농산물로 생산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혼합 비율은 생략할 수 없음

### ◇ 생산 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표시 예시

- ▶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원주시 15%)을 혼합한 경우  
⇒ 쌀(국산) 또는 쌀(국내산) 또는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 Q3 수입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수입 가공품은 ‘원료’가 아닌 ‘가공품 자체(수입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출국에서 원재료를 단순혼합한 경우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으로 표시 가능

###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예시

- ▶ 올바른 표시: 당근(중국산), 돼지고기(칠레산), 쇠고기(미국산)
- ▶ 올바른지 않은 표시: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위싱턴)

### ✍️ **알아두기**

#### ▶ 국내 가공품과 수입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① 밀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제조하는 밀가루 ⇒ **밀가루(밀: 미국산)** \* 원료 원산지 표시
- ② 밀가루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 **밀가루(미국산)** \* 제품 자체의 원산지 표시

## Q4 동일 품목의 국산(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는?

-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 혼합 비율은 생략할 수 없음

### ◇ 동일 품목의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표시 예시

- ▶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태국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 Q1 국내 가공품 제조 시 원산지 표시는?

»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는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 가공품을 포함)를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 ◇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예시

**예시1**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 밀가루 98%, 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를 제조한 경우

⇒ 부침가루: 밀가루(밀: 미국산)

**예시2** 1순위,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 찹쌀가루 76%, 팥 22%, 참기름 1%, 소금 1%를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 바람떡: 찹쌀가루(찹쌀: 국산), 팥(중국산)

**예시3** 그 외의 경우(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 밀가루 60%, 팥 20%, 동부 10%, 소금 5%, 설탕 5%를 혼합하여 팥빵을 제조한 경우

⇒ 팥빵: 밀가루(밀: 호주산), 팥(국산), 동부(중국산)

###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3순위까지의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예시1** A원료 30%(1순위), B원료 30%(1순위), C원료 25%(3순위), D원료 15%(4순위)인 경우

⇒ 1순위(A, B), 3순위(C)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예시2** A원료 30%(1순위), B원료 20%(2순위), C원료 20%(2순위), D원료 20%(2순위), E원료 10%(5순위)인 경우

⇒ 1순위(A), 2순위(B, C, D)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예시3** A원료 35%(1순위), B원료 20%(2순위), C원료 15%(3순위), D원료 15%(3순위), E원료 15%(3순위)인 경우

⇒ 1순위(A), 2순위(B), 3순위(C, D, E)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Q2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 당류가공품이란?

### » 식품첨가물이란?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 » 주정이란?

-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말합니다. 단,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은 제외합니다.

### » 당류란?

-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말합니다.

### » 당류가공품이란?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합니다.

## Q3 국내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 사용 시 원산지 표시는?

- » 국내 제조 가공품의 경우 1~3순위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그 표시 대상 원료 중 복합원재료가 있을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복합원재료 중 1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복합원재료 사용 시 원산지 표시 예시

▶ 양념장: 『**된장 40%**[콩 60%, 밀가루 40%], **고추장 30%**[참쌀 40%, 고춧가루 40%, 밀가루 20%], 콩 15%, 양파 5%, 마늘 5%, 고추 5%』일 경우

⇒ 된장(콩(미국산), 밀가루(말: 호주산)), 고추장(참쌀(국산), 고춧가루(고추: 중국산)), 콩(중국산)

1순위 복합원재료

2순위 복합원재료

3순위 단일원재료

-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1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시

▶ 딸기요구르트(원유(국산), 딸기농축액[딸기추출물(딸기: 국산, 라즈베리: 미국산), 베리주스(네덜란드)]...]

제품

1순위  
단일원재료

2순위  
복합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1순위  
복합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1가지 원료

복합원재료 내 2순위  
수입원제품

⇒ 딸기요구르트(원유(국산), 딸기농축액[딸기추출물(딸기: 국산), 베리주스(네덜란드)])

## Q4

### 표시대상 3순위인 '발효식초(복합원재료)'내에 표시대상 원료가 없을 경우는?

- »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3순위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인 발효식초[원료: 주정, 맥아엑기스(당류가공품), 발효영양원(혼합제제-식품첨가물)]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그러나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 따라서, 발효식초가 3순위 원료이나 사용된 원료가 모두 제외 대상 원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4순위 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발효식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가 없는 것으로 그 자체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알아두기

▶ 식초에 넣는 원료 중 '발효영양원', '맥아엑기스'의 경우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발효영양원' 식품유형: ① 기타가공품 → 표시 대상

② 혼합제제 등 식품첨가물 → 표시 대상에서 제외

⇒ '맥아엑기스' 식품유형: ① 기타가공품 → 표시 대상

② 엿류 또는 기타엿(당류) → 표시 대상에서 제외

## Q5 배합 비율 3순위가 '사탕(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배합 비율 3순위인 원료가 국내에서 제조한 '사탕(복합원재료)'인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차 순위인 4순위 원료(원산지 표시 대상 3순위)를 원산지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 Q6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는?

- » 국내에서 가공한 김치류 및 절임류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사용할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 ◇ 배추김치(김치류) 원산지 표시 예시

▶ 배추김치: 배추 70%, 무 10%, 고춧가루 4%, 찹쌀풀 4%, 대파 3%, 마늘 2%, 소금 2%, 젓갈 2%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배추김치: 배추(국내산), 무(국내산), 고춧가루(고추: 중국산), 소금(국내산)  
                   1순위 원료       2순위 원료                   의무표시                   의무표시

## Q7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는?

- »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해야 합니다.

◇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 원산지 표시 예시

▶ 매콤김치만두: 밀가루 40%, 배추김치 20%(배추 40%, 무 30%, 고춧가루 20%, 소금 10%), 빵가루 20%, 돼지고기 10%, 대파 5%, 고추 5%

⇒ 매콤김치만두: 밀가루(밀:캐나다산), 배추김치[배추(국산),고춧가루(고추:중국산)], 빵가루(밀:미국산)  
                     1순위 원료                          2순위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                          3순위 원료

### Q8 국산(국내산)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② 사용된 원료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를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국내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Q9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는?

- ②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 사용 시 원산지 표시 예시

### 〈농산물 명칭을 사용한 경우〉

▶ **고추장:** 고추양념, 현미, 밀가루, 고춧가루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고추양념**(중국산), **현미**(국산), **밀가루**(**밀**: 호주산), **고춧가루**(**고추**: 중국산)]

\* 고춧가루는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 대상이 아니어도 “고추”라는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

### 〈가공품 명칭을 사용한 경우〉

▶ **고추장** 닭갈비: 닭정육, 양파, 고추장, 혼합간장, 고춧가루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 닭갈비{닭정육(브라질산), 양파(국산), 고추장[고추양념(중국산), 현미(국산)]}

\* 고추장은 가공품 명칭으로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 **알아두기**

- ▶ <고추장>에서의 ‘고추’, <딸기잼>에서의 ‘딸기’는  
⇒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주원료 농산물로 보아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것에 해당됨
- ▶ <고추장 닭갈비>에서의 ‘고추장’, <딸기잼 쿠키>에서의 ‘딸기잼’은  
⇒ 가공품을 명칭 하는 한 단어로 보아 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 Q10 **제품명에 사용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 3순위 외의 원료로서 1) 원료 농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식품 첨가물·주정·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①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지만, 해당 원료가 복합원재료 내에서 5순위 외의 원료일 경우  
③ 복합원재료 내 원료가 복합원재료로써 원료명을 생략한 경우

### ◇ **제품명에 사용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예시**

- 예시1** **신선초 비빔밥**: 국산 신선초 1% 함유(배합 비율 3순위 외의 원료인 경우)  
⇒ ‘국산 신선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예시2** **망고아이스크림**: 국산 망고 1% 함유(배합 비율 3순위 외의 원료인 경우)  
⇒ ‘국산 망고’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다만, ‘외국산 신선초, 외국산 망고’ 사용 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임
- 예시3** **딸기아이스크림**: 천연향료(딸기: 국산) 2% 함유(배합 비율 3순위 외의 원료인 경우)  
⇒ 천연향료가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산 딸기의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천연향료가 기타가공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산 딸기의 원산지를 표시
- 예시4** **사과주스**: 배합 비율 3순위에 5% 이상 복합원재료인 사과농축액 함유(배합 비율 7순위 원료가 사과추출분말인 경우)  
⇒ ‘사과추출분말’은 복합원재료 내에서 5순위 외의 원료로 원료명을 생략한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 만약, 원재료명 표시가 생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명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도 함께 표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제품명에 사용된 농수산물의 명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제품명에 사용된 농수산물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표시 예시

▶ 정보표시면에 원료명을 생략 했으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 원료명이 생략되지 않은 경우

**예시** 딸기농축액(복합원재료)을 3% 사용하여 “딸기케익”을 제조할 경우

- ① 주표시면에 “**딸기 3% 함유**”를 표시하는 경우 농산물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임**(원산지는 정보표시면에 표시)
- ② 주표시면에 “**딸기농축액 3% 함유**”를 표시하는 경우 농산물 명칭이 아닌 가공품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 Q11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할 경우 ‘농수산물의 명칭’이란?

- » ‘농수산물의 명칭’은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코드 목록 중 국내 도매시장에 널리 유통되지 않는 품목일 경우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때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검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 ‘농수산물의 명칭’ 예시

- ▶ **농산물 명칭인 것**: 쌀, 콩, 고추, 참깨, 쇠고기, 당근, 헛개나무, 허브, 녹차잎, 카카오(코코아) 등
- ▶ **농산물 명칭이 아닌 것**: 김치, 한과, 야채, 과일, 고기, 카레, 치즈, 통곡물, 녹차, 초콜릿, 초코 등

#### 🔗 **알아두기**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검색 및 확인 방법

⇒ aT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http://at.agromarket.kr>) ⇒ 정보안내 ⇒ 표준코드 ⇒ 품목코드검색으로 확인

## Q12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이천 쌀, 평창 한우** 등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그 지역 농산물인 경우에** 표시 가능합니다.

- » 국내 가공품에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천 쌀** 막걸리와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한다면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상표법」에서도 지역명 사용을 규제하여 지리적단체표장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

### ◇ 지역명과 가공품 명칭 사용 예시

▶ 산청 막걸리: 지역명(산청)과 가공품 명칭(막걸리)을 함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막걸리가 산청 지역에서 제조·가공된 경우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지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시 「상표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Q13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수입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특정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 ‘외국산 (A국·B국·C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00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신제품의 경우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 ◇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적용 예시

- ▶ '20년: 3개국 → '21년: 4개국 → '22년: 2개국 → '23년: 1개국 → '24년: 1개국이 변경 되었을 경우(최근 3년 이내 기준시점은 포장재 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 '22년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 가능**  
(최근 3년 이내 9개국 변경으로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조건 충족)
  - ⇒ '23년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 불가능**  
(최근 3년 이내 7개국 변경으로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조건 미충족)
  - ⇒ '24년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 불가능**  
(최근 3년 이내 4개국 변경으로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조건 미충족)

#### 🔍 알아보기

- ▶ '별도 표시'는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원산지: 오렌지[외국산(국가명은 QR코드에 별도 표시)]  
또는 오렌지[외국산(국가명은 홈페이지에 별도 표시)]



[www.naqs.go.kr](http://www.naqs.go.kr)

- » QR코드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 QR코드로 연결하여 홈페이지에 원산지 별도 표시 예시

- ▶ 유통기한이 3년, 제조일 기준 2022.1월부터~12월까지 생산한 제품
  - ⇒ 제조일 2022.1.1.~5.31.까지: 원재료명(○○산)
  - ⇒ 제조일 2022.6.1.~9.30.까지: 원재료명(△△산)
  - ⇒ 제조일 2022.10.1.~12.31.까지: 원재료명(□□산)
- \* 위와 같이 "원재료명: 원산지"로 표시하며,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원산지 표시를 유지
- \*\*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에만 별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일 국가일 경우 QR코드 및 별도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예시

- ▶ 대두: 미국·캐나다·호주 → 미국·캐나다·중국으로 변경된 경우
  -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중국산 대두를 사용한 시점)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대두(외국산: 미국, 캐나다, 호주 등)'로 표시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음
  - 즉, '대두: 외국산(미국·캐나다·호주 등)'으로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하다가 원료 수급 사정으로 호주산 대두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점이 '23년 9월 1일까지라면 '24년 8월 31일까지는 기존 포장재 사용이 가능함

## Q14 '외국산(A국·B국·C국 등)'으로 표시를 할 경우 "등"을 생략해도 되는지?

- » '외국산(A국·B국·C국 등)' 표시를 할 경우, 3개국의 원료만 사용한다고 하여 "등"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산(A국·B국·C국 등)'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시 기준이므로 "등"까지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 Q15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수입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특정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 '외국산'으로만 표시 가능합니다.
-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 내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각각 다른 6개국을 초과하여 원산지 변경된 경우 예시

-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7개국 이상 바뀐 경우(1년 단위로 평균치가 7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미국 ⇒ 중국 ⇒ 호주 ⇒ 캐나다 ⇒ 태국 ⇒ 필리핀 ⇒ 일본 / 미국 ⇒ 중국 ⇒ 호주 ⇒ 캐나다  
⇒ 태국 ⇒ 필리핀 ⇒ 일본 / 미국 ⇒ 중국 ⇒ 호주 ⇒ 캐나다 ⇒ 태국 ⇒ 필리핀 ⇒ 일본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현미 사용 원산지 표시 예시

- ▶ 정부가 공급한 수입현미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 대상 수입쌀(HS번호: 1006)에는 현미(HS번호: 1006.20)가 포함됨에 따라  
‘현미: 외국산’으로 원산지 표시 가능

◇ 복합원재료 내 특정 원료의 ‘외국산’ 표시 가능 예시

- ▶ 김말이: 당면[고구마전분(중국산)], 튀김가루[밀가루(밀: 미국산), 옥수수전분(옥수수: 외국산 (헝가리·세르비아·러시아 등)), 정제소금, 백후추 분말]...  
⇒ 옥수수전분은 복합원재료(튀김가루)의 특정 원료로 사용되어 국가명을 생략하고 ‘옥수수: 외국산’으로만 표시 가능
- ▶ 녹두죽: 녹두(페루산), 두유(대두(외국산: 미국·캐나다·호주 등)), 식염(중국산), 양파(국산)..  
⇒ 대두는 복합원재료(두유)의 특정 원료로 사용되어 국가명을 생략하고 ‘대두: 외국산’으로만 원산지 표시 가능

## Q16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국가의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 (단일국가+단일국가) 동일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표시 예시

- ▶ 들기름: 들깨(중국산 50%, 베트남산 30%, 미얀마산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들기름: 들깨(중국산 50%, 베트남산 30%)

## ✍️ **알아두기**

- ▶ 원료를 혼합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국(00국, 00국)'을 같이 표시할 수 없음  
⇒ 사용하는 시점의 원료에 따라 2종류의 포장재로 나눠서 [들기름: 들깨(중국산)] 또는 [들기름: 들깨(베트남산)]으로 포장재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 표시

## ◇ (단일국가+외국산) 동일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표시 예시

- ▶ 탈지대두: 인도산 50%, 외국산(인도·미국·중국 등) 30%, 미국산 20%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탈지대두[인도산 50%, 외국산(인도·미국·중국 등) 30%]  
\* 탈지대두의 원산지 '인도산'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해서 '탈지대두[외국산(인도·미국·중국 등)]'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음

## Q17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는?

- » (원칙)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는 혼합 비율을 변경하여 표시해야 함
- » 혼합된 동일 원료 중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포장재 사용 예시

- 기존** 탈지대두: A국 40%, B국 20%, C국 20%, D국 20%로 혼합한 제품 생산 중  
⇒ 탈지대두: A국 40%, B국 20%(포장재 원산지 표시)
- 변경** 'D국'의 원료 수급이 어려워져 혼합 비율을 변경하여 생산할 경우
  - ① A국 40%, B국 35%, C국 20%, D국 5%  
⇒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 ② A국 55%, B국 5%, C국 35%, D국 5%  
⇒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 ③ A국 20%, B국 30%, C국 30%, D국 20%  
⇒ A국의 변경의 폭이 20%(15% 초과)이므로 1년의 범위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불가능

# Q18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 시, 혼합 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포함),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 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예시

- ▶ 고춧가루의 고추 원산지가 중국 70%, 미국 30% → 미국 50%, 중국 50% → 미국 70%, 중국 30%로 최근 1년 동안 혼합 비율 변경이 3회 이상일 때  
⇒ 고춧가루(고추: 미국산, 중국산)

### ✍️ 알아두기

- ▶ 4개국(미국 40%, 중국 30%, 호주 20%, 러시아 10%)된 밀가루(밀)의 원산지가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될 때'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국 이상의 원산지 표시는?

예시1 밀가루(밀: 미국, 중국)

예시2 밀가루(밀: 미국, 중국, 호주)

예시3 밀가루(밀: 미국, 중국, 호주, 러시아)

⇒ 예시 1, 2, 3 모두 표시 가능

## Q1

### 통신판매의 범위는?

- »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 포함)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를 말합니다.

#### 알아두기

- ▶ **통신판매:** 우편·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방송, 신문 및 잡지 등(전단지 제외)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전화권유 판매는 제외됨
- ▶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

## Q2

### 인쇄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는?

- » 인쇄매체의 경우(신문, 잡지 등) 표시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크기를 달리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알아두기

- ▶ **광고 면적 기준 글자크기:** 3,000cm<sup>2</sup>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50cm<sup>2</sup> 이상~3,000cm<sup>2</sup>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50cm<sup>2</sup>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 Q3

### 마트에서 제공하는 전단지의 원산지 표시는?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에 따라 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통신판매로 보지 않고 있어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 Q4

###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시의 원산지 표시는?

- » 전자매체의 경우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표시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함)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하며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함

- » 전자매체의 경우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는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해야 합니다.

## Q5

### 통신판매로 주문 받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 원산지 표시는?

- » 통신판매로 주문 받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배송 시에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 순위에 따른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통신판매 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단위가 세트 상품인 경우로써 상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된 안내 전단지(리스트),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으로 배송되는 세트 상품에 동봉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Q1

###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가 **미변경 되는** 경우는?

-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성장시킨 경우에는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 원산지가 미변경 되는 경우 표시 예시

- ▶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 **인삼(중국산), 도라지(중국산)**
- ▶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 **원산지 미변경**

## Q2

###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가 **변경 되는** 경우는?

- » 종자를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 원산지가 변경 되는 경우 표시 예시

- ▶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 **마늘(국산), 마(국산)**
- ▶ 수입 꽃가지 등을 절단하여 국내에 이식(삽목 또는 접목)한 후 새롭게 생성된 화아(꽃)의 경우  
⇒ **원산지가 '국산'으로 변경**

#### 🔗 **알아두기**

##### ▶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종자를 말하며,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함

### Q3

####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가 **전환되는** 경우는?

- »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 사육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가 변경됩니다.

##### ◇ 가축의 원산지가 전환되는 경우 표시 예시

- ▶ 소: 6개월 / 돼지·양·염소: 2개월 / 그 외 가축: 1개월(원산지 표기 시 출생국을 함께 표시)
- ▶ 돼지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사육 후 도축한 경우  
⇒ 돼지고기(원산지: 국산, 출생국: 미국)

### Q4

####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수확 판매 시 원산지 표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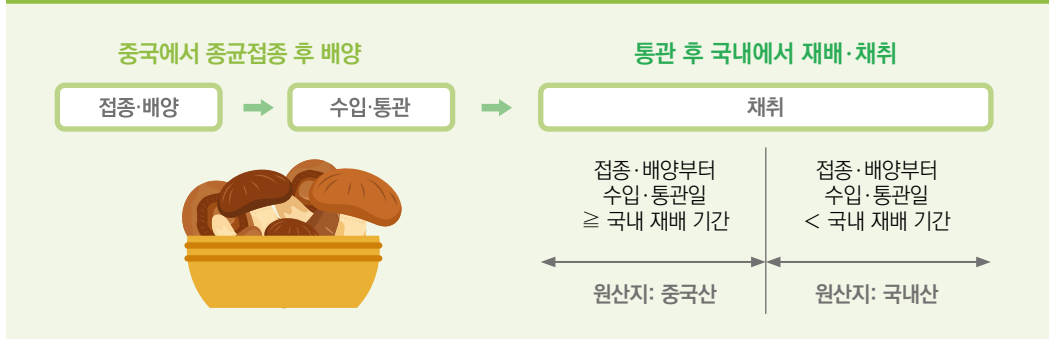
- » 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에는 '**원산지 변경**'으로 보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며, 추가적으로 '**접종·배양: ○○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 일반버섯의 원산지 표시 예시

- ▶ 양송이버섯(국내산, 접종·배양: 네덜란드) / 느타리버섯(국내산, 접종·배양: 중국)

- » 다만, **표고버섯**은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에는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 표시해야 합니다.

##### ◇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 예시



## Q1

###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 » 건강기능식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을 주원료 또는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대상으로 합니다.

-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내 가공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 ◇ 건강기능식품 원산지 표시 예시

**예시1** 은행잎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품목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배합 비율이 은행잎추출물 65%, 포도씨유 20%, 밀납 7%, 레시틴 5%, 우영 2%, 호박씨유 1%인 경우  
⇒ 1순위(은행잎추출물), 2순위(포도씨유), 3순위(우영) 원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  
※ 식품첨가물(밀납, 레시틴)은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배합 비율 순위에서 제외되며, 4순위 원료(호박씨유)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예시2** 옥타코사놀함유유지를 기능성원료로 품목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배합 비율이 옥수수수염추출물 50%, 마카뿌리분말 30%, 녹차추출물분말 10%, 옥타코사놀함유유지 2%, 그 외 첨가물인 경우  
⇒ 1순위(옥수수수염추출물), 2순위(마카뿌리분말), 3순위(녹차추출물분말) 원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  
※ 옥타코사놀함유유지를 주원료 또는 주성분으로 품목 신고하였더라도 표시 대상 3순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님

## Q2

### 당류의 원산지 표시는?

- » 당류 중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를 국내에서 제품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해당되어 원료(전분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당류를 국내 가공품 '원료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류: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류가공품

※ 국내 가공품의 원료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

## Q3 주류의 원산지 표시는?

- »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11개 품목(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가공품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주류 원료인 '주정'은 배합 비율 순위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알아두기

- ▶ '주정'과 '주류'는 다르므로 '주류'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합원재료로 원산지 표시를 해주어야 함

## Q4 새싹채소와 어린잎채소의 구분 및 원산지 표시는?

- » **새싹채소**는 종자의 싹을 틔워 재배한 어린 떡잎(줄기 포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 가공품으로 원료(종자)의 배합 비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종류: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브로콜리새싹 등

### ◇ 새싹채소 원산지 표시 예시

- ▶ 무순(무종자: 중국산) 또는 무순(중국산)

- » **어린잎채소**는 본 잎이 나와 어느 정도 자라 작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채소를 말하며, 종자를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어린잎채소 원산지 표시 예시

- ▶ 청경채(국내산), 시금치(국내산)

### 알아두기

#### ▶ 새싹채소와 어린잎채소의 구분

⇒ 새싹채소는 떡잎까지만 나온 것을 말하며(씨앗의 원산지 표시), 어린잎채소는 본잎이 나와 어느 정도 자라 작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재배지의 원산지 표시)을 말함

## Q1 제과점영업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 » 제과점영업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제품(커피, 주스 등 음료 포함)은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알아두기

- ▶ 즉석제조판매업에서 '직접 조리'하더라도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 원료에 대하여 표시해야 함
- ▶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메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기준'을 적용 함
  - ※ 단, '직접 조리'하지 않는 농산물·가공품은 농산물·가공품 표시기준을 적용 함

## Q2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 원산지를 스티커로 수정가능한지?

- »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기존 포장재의 원산지가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착해야 하며, 유통과정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소진시켜 추후 원산지가 직접 기재된 포장재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 Q1

### 농산물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 »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 예시

| 구분   |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
|------|----------------------------------------------------------------------------------------------------------------------------------------------------------------------------------------------------------------------------------------------------------------|
| 표시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 표시문자 |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
| 글자크기 | 1. 포장 표면적이 3,000cm <sup>2</sup> 이상인 경우: <b>“20포인트”</b> 이상<br>2. 포장 표면적이 50cm <sup>2</sup> 이상~3,000cm <sup>2</sup> 미만인 경우: <b>“12포인트”</b> 이상<br>3. 포장 표면적이 50cm <sup>2</sup> 미만인 경우: <b>“8포인트”</b> 이상<br>*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의 합을 말함

## Q2

### 농수산물 가공품(수입, 반입, 국내 가공 포함)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 » 농수산물 가공품(수입, 반입, 국내 가공 포함)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 구분   |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                                                                                                    |
|------|----------------------------------------------------------------------------------------------------------------------------------------------------------------------------------------------------------|----------------------------------------------------------------------------------------------------|
| 표시위치 | 수입·반입 가공품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      | 국내 가공품                                                                                                                                                                                                   |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br>*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
| 표시문자 |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                                                                                                    |
| 글자크기 |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b>진하게(굵게)</b> 표시 ※ ex) 밀가루( <b>밀: 미국산</b> )<br>*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br>2.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br>*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                                                                                                    |
| 글자색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br>*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

## Q3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 » 국산·수입·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 풋말, 안내표시판 등 원산지 표시 예시

| 구분                                          | 제작기준                          | 글자크기                                                  |
|---------------------------------------------|-------------------------------|-------------------------------------------------------|
| 풋말                                          | 가로8cm×세로5cm×높이5cm 이상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br>글자크기의<br>1/2 이상으로 하되,<br>최소 “12포인트” 이상 |
| 안내표시판                                       | 진열대<br>가로7cm×세로5cm 이상         |                                                       |
|                                             | 판매장소<br>가로14cm×세로10cm 이상      |                                                       |
| 스티커(상품에 부착)                                 | 가로3cm×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20포인트”<br>이상                                         |
| 일괄 안내표시판<br>(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br>있는 경우 사용 불가) | 가로14cm×세로10cm 이상              |                                                       |

## 음식점

PART 1 공통사항

PART 2 음식점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

PART 3 상황별 원산지 표시



## Q1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총 29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20)입니다.
  - **농축산물(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2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및 부세**
  -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 » 대상품목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 » 배추김치, 축산물, 수산물은 모든 조리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쌀은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한 경우와 **콩은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함),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한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Q2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메뉴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급식소
    -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Q3

## 음식점에서 원산지 일괄 표시는?

- »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해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 일괄 표시 예시

| 한식(일괄 표시)                                                                                                                                                                                                                                                                                                                                                                                           | 서양식(일괄 표시)                                                                                                                                                                                                                                                                                                                                                                                                  | 일식(일괄 표시)                                                                                                                                                                                                                                                                                   |
|-----------------------------------------------------------------------------------------------------------------------------------------------------------------------------------------------------------------------------------------------------------------------------------------------------------------------------------------------------------------------------------------------------|-------------------------------------------------------------------------------------------------------------------------------------------------------------------------------------------------------------------------------------------------------------------------------------------------------------------------------------------------------------------------------------------------------------|---------------------------------------------------------------------------------------------------------------------------------------------------------------------------------------------------------------------------------------------------------------------------------------------|
| <p><b>메뉴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겹살(돼지고기 : 국내산)</li> <li>• 한정식(돼지고기 : 칠레산)</li> <li>• 육회(쇠고기 : 국내산 한우)</li> <li>• 김치찌개(배추김치 : 중국산, 돼지고기 : 멕시코산)</li> <li>• 갈비탕(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쇠육)</li> <li>• 차돌면장찌개(쇠고기 : 캐나다산)</li> <li>•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li> <li>• 공기밥, 누룽지</li> <li>• 후식 된장찌개(돼지고기 : 멕시코산)</li> </ul> <p>※ 우리 업소에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두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 | <p><b>메뉴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햄박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li> <li>• 수제돈가스(돼지고기 : 국내산)</li> <li>• 카레돈가스(돼지고기 : 국내산)</li> <li>• 김치돈가스(돼지고기 : 미국산, 배추김치 : 중국산)</li> <li>• 생선가스(명태 : 러시아산)</li> <li>• 치킨너겟(닭고기 : 브라질산과 미국산 섞음)</li> <li>• 토마토스파게티(돼지고기 : 미국산)</li> <li>•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과 국내산 섞음)</li> <li>• 공기밥</li> </ul> <p>※ 우리 업소에는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 | <p><b>메뉴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회(넙치 : 국내산, 참돔 : 중국산)</li> <li>• 초밥(참돔 : 일본산, 쌀 : 미국산)</li> <li>• 회덮밥(넙치 : 중국산, 쌀 : 미국산)</li> <li>• 전복죽(쌀 : 국내산)</li> <li>• 공기밥(쌀 : 국내산)</li> <li>• 배추김치</li> </ul> <p>※ 우리 업소에는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 |



## Q4 음식점에서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원산지가 '외국산(A국·B국·C국 등)',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식재료가 '가공품'이 아니라면 음식점 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으며, 변경된 경우 해당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즉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 ◇ '외국산' 원산지 표시 예시

- ▶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된장찌개[두부(콩: 외국산)]

## Q5 음식점에서 **동일 품목을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는?

- » 음식점에서 동일품목을 혼합하여 음식을 조리할 때,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 표시가 가능하고,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원료별로 구분하여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동일 품목(축산물+식육가공품)을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 표시 예시

- 예시1** 볶음밥 조리 시 '돼지고기: 국산', '베이컨(돼지고기: 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 **볶음밥[돼지고기(국산)]**
- 예시2** 볶음밥 조리 시 '돼지고기: 국산', '베이컨(돼지고기: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 **볶음밥[돼지고기: 국산, 베이컨(돼지고기: 외국산)] \* 국산 비율이 높은 경우**
- 예시3** 제육볶음 조리 시 '양념육: 돼지고기[외국산(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산 등)]', '포장육: 돼지고기(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 **제육볶음[돼지고기: 미국산, 양념육(돼지고기: 외국산) 섞음] \* 미국산 비율이 높은 경우**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표시 예시

예시1 쇠고기: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예시2 돼지고기: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예시3 닭고기: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음)

예시4 쌀: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예시5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외국산의 섞음 비율이 국내산(국산) 보다 높은 경우 표시 예시

예시1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예시2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예시3 낙지볶음(낙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알아두기**

▶ 콤마(,)로도 섞음 표시 가능: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호주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불고기(쇠고기: 호주산)”

## Q6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는?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을 혼합한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섞음 표시는 하지 않음)

###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혼합하여 조리할 경우 표시 예시

- ▶ 함박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 ▶ 모듬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 Q7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 » 음식점에서는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그 원료의 해당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원산지와 가격 등을 따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닭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격으로 구분한 원산지 표시 예시

| 메뉴판                |         |
|--------------------|---------|
| 후라이드치킨(닭고기: 국내산)   | 20,000원 |
| 양념치킨(닭고기: 국내산)     | 21,000원 |
| 후라이드 날개(닭고기: 국내산)  | 22,000원 |
| 후라이드 날개(닭고기: 브라질산) | 20,000원 |
| 양념 날개(닭고기: 국내산)    | 24,000원 |
| 양념 날개(닭고기: 브라질산)   | 22,000원 |

- 만약, 브라질산 닭고기(날개)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날개)가 있는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Q8

###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재료 등의 원산지 표시는?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 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 등에 일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거래명세서 등의 범위:** 공급(납품)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간이 포함), 원산지증명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

#### 알아두기

▶ 음식점에 여러 대의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마다 보관 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표시 대상 29개 품목에 해당되는 식재료 마다 원산지 표시



또는



냉장고 앞에 표시대상 29개 품목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여 부착

| 품명   | 원산지    |
|------|--------|
| 쇠고기  | 국내산 육우 |
| 닭고기  | 멕시코산   |
| 삼겹살  | 칠레산    |
| 배추김치 | 중국산    |
| 고등어  | 일본산    |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이 있을 경우는 식재료마다 원산지를 표시

## Q9

### 음식점에서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는?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되며, 햄·소시지 등은 보관대상이 아님

-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 \* 대상품목(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 쌀, 배추김치 등 다른 품목도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장 포함)을 보관하였다가 원산지 증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냉장고 등 보관 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알아두기

- ▶ 축산물 거래명세서와 달리 쌀, 콩, 배추김치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는 없음

## Q10 음식점에서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 세부기준은?

- »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식육가공품, 배추김치가공품, 쌀가공품, 콩가공품은 그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주원료는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합니다.
- **(식육가공품의 주원료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제조에 사용된 “식육”으로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쌀·배추김치·콩 가공품의 주원료란)** 그 원료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공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포함된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입한 농수산물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축산물은 식육가공품에 한함)**

#### ◇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예시1** **사골우거지국(식육추출가공품):** 소정육 20.5%(호주산), 배추우거지 14.5%(국내산), 사골농축액 2.3%[우사골추출물[우사골(국내산), 우골(국내산), 정제수], 정제염(국내산)], 사골우거지 양념 1.5%, 정제수

⇒ **사골우거지국: 쇠고기(호주산), 사골농축액(우사골추출물[우사골(국내산), 우골(국내산)])**

\* 배합 비율 3순위 내에 원산지가 표시된 소정육과 사골농축액내 우사골, 우골은 식육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임

**예시2** **소떡소떡(식육함유가공품):** 쌀 떡볶이 57%(쌀: 외국산, 식염: 국산, 주정), 숯불갈비향 소시지 42%(계육: 국산, 돈육: 국산, 당근: 국산), 대두유(대두: 미국산)

⇒ **소떡소떡: 소시지[닭고기(국산), 돼지고기(국산)]**

\* 배합 비율 3순위 내에 원산지가 표시된 숯불갈비향소시지 내 계육과 돈육은 식육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임

**예시3** **김치볶음밥(즉석조리식품):** 쌀 42.3%(국산), 김치 38.5%[배추(국산), 무(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마늘, 대파], 옥수수기름 5.2%[옥수수배아(미국산)], 양파, 그린빈, 대파, 설탕, 고추장, 복합조미식품1, 복합조미식품2, 파프리카 추출 색소

⇒ **김치볶음밥: 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김치볶음밥은 쌀과 배추김치 가공품에 해당되어 배합 비율 3순위 내의 주원료인 쌀과 배추김치를 원산지 표시해야 함

**예시4** **김치만두(만두류):** 밀가루 30%(밀: 미국산), 배추김치 25%[배추(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돼지고기 25%(국산), 마늘 10%, 양파 5%, 고추장 5%

⇒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만두류는 식육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아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배추김치 가공품에 해당되어 배합 비율 3순위 내의 주원료인 배추김치를 원산지 표시해야 함

#### ◇ 수입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시

▶ **미국산 소시지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 미국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알아두기**

▶ **식육이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 **포장육이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육 함량 100%)

▶ **식육가공품이란?**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말함

## Q11 음식점에서 메뉴판,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판에 일괄 표시한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문답 Q13. 참조)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합니다.

## Q12 태블릿PC를 이용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태블릿PC를 이용한 메뉴판 사용 시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태블릿PC 내 여러 화면 중 한 화면에 '원산지 표시판'과 같이 원산지를 모아 표시하거나 메뉴명 옆에 원산지 정보제공란 등을 클릭 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올바른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 Q13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규정에 따른 위치에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판' 제작기준

- 가.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나.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일 것
-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라.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마.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글자크기 예시〉

60 포인트

30 포인트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게시) 의무는 없음

# Q14

##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 부착 위치는?

- » 게시판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는 업소 내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 »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 » 취식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Q15

##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 » 위탁 및 집단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풋말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
  -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풋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Q1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 »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 \* 용도(반찬용 등)에 구분 없이 제공하는 '쇠고기 장조림'의 쇠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다만, 쇠고기 장조림의 식품유형이 조림류일 경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 국내에서 가공된 식육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1~3순위(주원료)] 중 가공품에 사용된 식육(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부산물 포함), 포장육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쇠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젓소)
  - ▶ **외국산**: 갈비(쇠고기: 미국산), 등심(쇠고기: 호주산), 갈비탕(쇠고기: 뉴질랜드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설령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양념갈비의 경우  
⇒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알아두기**

- ▶ 전골류 판매 시 육수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고기 뼈는 부산물로 '식육'에 포함되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 **부산물의 종류**: 내장, 선지, 머리, 족, 꼬리, 뼈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

## Q2 돼지·닭·오리·양 및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 » 돼지·닭·오리·양 및 염소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 국내에서 가공된 식육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1~3순위(주원료)] 중 가공품에 사용된 식육(돼지·닭·오리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갈비(돼지고기: 국내산),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족발(돼지고기: 국내산)
  - ▶ **외국산**: 갈비(돼지고기: 미국산), 삼겹살(돼지고기: 벨기에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 국내산 비율이 높은 경우**
    - ⇒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 부대찌개(돼지고기: 국내산), 햄(돼지고기: 외국산), 소시지(돼지고기: 국내산)
-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 닭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후라이드치킨(닭고기: 국내산)
  - ▶ **외국산**: 닭볶음탕(닭고기: 미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 **닭 부산물인 닭염통(국내산), 닭연골(국내산)로 모듬꼬치 제조 시**
    - ⇒ 모듬꼬치(닭고기: 국내산)
- ※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닭염통, 닭연골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임
-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 ▶ **외국산:**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오리로스(오리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 양 및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염소탕(염소고기: 국내산)
- ▶ **외국산:** 양고기(양고기: 중국산)
- ▶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염소탕(염소고기: 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음)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Q3 쌀의 원산지 표시는?

-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찰쌀, 현미 및 찌쌀을 포함)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 국내에서 가공된 쌀 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1~3순위(주원료)] 중 가공품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쌀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쌀(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
- ▶ **외국산:** 쌀(미국산), 잡곡밥(쌀: 미국산)

#### **알아두기**

- ▶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떡볶이, 떡국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 Q4 흑미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흑미는 농수축산물 표준코드(<http://at.agromarket.kr>)에서 “쌀”의 소분류 품종으로 분류되어 흑미를 음식점에서 ‘밥, 죽, 누룽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알아두기

- ▶ 기장쌀, 보리쌀, 수수쌀, 울무쌀 등 잡곡류·맥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 Q5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 »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예시

- ▶ 국내산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 ▶ 국내산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 수입 가공품(중국산) 배추김치 사용: 배추김치(중국산)  
⇒ 수입 가공품의 배추김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를 표시

### 알아두기

- ▶ 겉절이, 씻은 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 대상임
- ▶ 주원료가 열무이고,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열무김치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열무김치에 포함된 얼갈이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 Q6

###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는?

- » 음식점에서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원산지가 다른 배추김치를 섞어서 조리하는 경우 표시 예시

- ▶ 김치찌개 조리 시 '배추김치: 배추(국산), 고춧가루(국산)', '배추김치: 중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시1** 국산의 섞음 비율이 중국산보다 높은 경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배추 국산, 고춧가루 국산)과 중국산을 섞음]

**예시2** 중국산의 섞음 비율이 국산보다 높은 경우

⇒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과 (배추 국산, 고춧가루 국산)을 섞음]

※ '섞음' 표시는 권장사항임

## Q7

### 배추김치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 » 배추김치가공품은 배추김치가 주원료로 전체 또는 일부로 사용되어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합니다.

\* 배추김치가공품: 김치찌개 레토르트, 오징어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만두 등

-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만두 등)을 구입한 후 용도(방법)에 구분 없이 이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

- 따라서, 국내에서 가공된 배추김치 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3순위까지) 중 가공품에 사용된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배추김치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 ▶ 김치만두: 밀가루 30%(밀: 미국산), **배추김치 25%[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산)]**, 돼지고기 25%(국산), 마늘 10%, 양파 5%, 고추장 5%

⇒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Q8 콩의 원산지 표시는?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함),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을 포함)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직접 만드는 두부와 시판 중인 두부를 조리할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 콩 원산지 표시 예시

- ▶ 된장찌개[두부(콩: 국내산)] / 콩국수(콩: 국내산)
- ▶ 콩국수에 두유제품을 넣었을 경우 ⇒ 콩국수[콩(국내산), 두유(콩: 외국산)]

### 🔗 알아두기

- ▶ **두부류:** 두류(두류분 포함, 100%, 단 식염 제외)를 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함
- ▶ **유바:** 두류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 형성되는 피막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함  
\* 마라탕 조리 재료인 ‘푸주’가 식품유형이 ‘유바’일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님
- ▶ **가공두부:** 두부 제조 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다만, 두부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 포두부 사용 시 식품유형이 ‘가공두부’일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지만, ‘두부류’일 경우는 원산지 표시 대상임

Q1

휴게음식점에서 냉동핫도그(빵류)를 구입하여 전자레인지에 데워 손님에게 판매 시 원산지 표시는?

- »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단순가열도 '조리'로 판단함에 따라 전자레인지로 데워주는 핫도그도 조리 음식으로 보아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 (구입한 가공품일 경우) 냉동핫도그를 데워서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냉동핫도그의 식품 유형은 '빵류'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가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조리한 경우) 소시지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직접 튀긴 핫도그를 손님에게 판매할 경우, 소시지는 식육가공품인 '소시지류'에 해당되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음식점 조리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예시

- ① 빵·과자·아이스크림류, 김밥류 등을 휴게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음식점 표시기준 적용  
⇒ '조리'에는 단순 가열, 토핑 등을 포함
- ② 실온 해동한 완제품은 가공품 표시기준(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료 원산지 표시) 적용
- ③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가공품 표시기준(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 원료 원산지 표시) 적용

\* 완제품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손에 닿지 않는 쇼케이스에 보이지 않게 진열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원산지 확인이 안 될 경우 꺾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해야 함

## Q2

### 배달앱 등에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 » 배달앱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 해당되며, 통신판매 표시방법에 따라 음식명 옆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글자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함)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하며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함

- » 또한, 음식점에서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음식점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및 부정유통신고



## Q1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 »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 등

- 누구든지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인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의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0이 부과됩니다.

##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불이행

- 원산지 표시를 미표시·거짓표시 등을 한 자가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형량 하한제 적용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등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습니다.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등을 하는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시정명령 처분 및 홈페이지 공표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표시 등을 하여 이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 공표되는 내용은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농수산물의 명칭,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입니다.

## Q2 원산지 미표시 세부기준은?

### » 원산지 미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과태료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br>위반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        |        |             |
| 1)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2)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3)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4)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5)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행정처분 및 부정유통신고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과태료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br>위반   |
| 6)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품목별<br>30만 원        | 품목별<br>60만 원 | 품목별<br>100만 원 | 품목별<br>100만 원 |
| 7)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8)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9)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10)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챙이, 전복, 방어 및 부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품목별<br>30만 원        | 품목별<br>60만 원 | 품목별<br>100만 원 | 품목별<br>100만 원 |
| 11)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               |
|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               |
|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 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 마.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 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2 |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 위반행위                                               | 근거<br>법조문     | 과태료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br>위반 |
| 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 사.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2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 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1호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자.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2호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차.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3호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카.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4호 | 5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타.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제5호 |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식품접객업 및 위탁(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의 원산지과 식육의 종류를 1차로 미표시 하였을 경우  
나목 1)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 부과

※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점 대상품목 통신판매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행정처분 및 부정유통신고

- » 식품접객업 및 위탁(집단)급식소에서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 삭제 <2017. 5. 29.>                                                                        |                                         |              |              |
|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25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7)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품목별<br>15만 원                            | 품목별<br>30만 원 | 품목별<br>50만 원 |
| 8)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9) 배추 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10)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11) 납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품목별<br>15만 원                            | 품목별<br>30만 원 | 품목별<br>50만 원 |
| 12)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나목11)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              |              |

※ 식품접객업 및 위탁(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하나, 2)에 따른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모두 위반 포함)한 경우는 25만 원 부과

» 농수산물 가공품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액(연간 매출액)       | 과태료 부과금액(만 원)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1억 원 미만           | 20            | 30    | 60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30            | 50    | 100      |
|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 50            | 100   | 200      |
| 4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100           | 200   | 400      |
| 6억 원 이상 8억 원 미만   | 150           | 300   | 600      |
| 8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00           | 400   | 800      |
| 10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250           | 500   | 1,000    |
| 12억 원 이상 14억 원 미만 | 400           | 600   | 1,000    |
| 14억 원 이상 16억 원 미만 | 500           | 700   | 1,000    |
| 16억 원 이상 18억 원 미만 | 600           | 800   | 1,000    |
| 18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700           | 900   | 1,000    |
| 20억 원 이상          | 800           | 1,000 | 1,000    |



### Q3 과징금 부과기준은?

- » 과징금은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등에 적용하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합니다.
- » 위반금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금액                    | 과징금의 금액             |
|-------------------------|---------------------|
| 1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0.5          |
|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0.7          |
|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1.0          |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1.5          |
|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2.0          |
|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2.5          |
|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위반금액 × 3.0          |
| 6,000만 원 초과             | 위반금액 × 4.0(최고 3억 원) |

### Q4 부정유통신고 방법은?

- » 원산지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산지 표시 부정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전화를 하시거나 신고업소의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거사진, 현물 등)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http://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수산물 부정유통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로 전화

## Q5 신고포상금 처리 절차는?

- » 본원 접수된 신고건 → 해당지원 또는 사무소에 이첩처리 / 지원에 접수된 신고건 → 해당 사무소에 이첩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와 영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음식점 신고 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참고

## Q6 개인의 원산지 검정(판별) 의뢰 신청 가능 여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수사목적상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과학적인 식별법과 육안 식별법을 개발하여 조사·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영업자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원산지 검정의뢰 접수나 원산지검정(판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은 유전자분석방법(DNA검사), 이화학분석방법(근적외선분광분석기, X선형광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분석기) 등이 있으며,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04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정함



## Q1

## 국산 농산물: 22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 품목류                   | 대상품목                                                                                                                                                                                                                                                                                                               |
|-----------------------|--------------------------------------------------------------------------------------------------------------------------------------------------------------------------------------------------------------------------------------------------------------------------------------------------------------------|
| 미곡류(6)                | 쌀, 찰쌀, 현미, 벼, 발벼, 찰벼                                                                                                                                                                                                                                                                                               |
| 맥류(6)                 |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
| 잡곡류(6)                |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울무                                                                                                                                                                                                                                                                                             |
| 두류(7)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
| 서류(3)                 | 감자, 고구마, 야콘                                                                                                                                                                                                                                                                                                        |
| 특용작물류(6)              |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
| 과일과채류(6)              |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
| 과채류(2)                | 호박, 오이                                                                                                                                                                                                                                                                                                             |
| 엽경채류(6)               | 배추·양배추(포장된 것), 건 고구마순, 건 토란대, 쑥, 건 무청(시래기)                                                                                                                                                                                                                                                                         |
| 근채류(7)                | 무말랭이, 무·알타리무·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
| 조미채소류(10)             | 양파, 대파·쪽파·싹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                                                                                                                                                                                                                                                                   |
| 양채류(3)                | 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
| 약용작물<br>(약재)류<br>(66) | 갈근, 감초, 강황,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충충갈고리둥굴레), 옥죽/외유(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
| 과실류(28)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뽕은감, 꽃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 포함), 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
| 수실류(6)                |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

| 품목류                 | 대상품목                                                                                                |
|---------------------|-----------------------------------------------------------------------------------------------------|
| 버섯류(15)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
| 인삼류(2)              |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
| 산채류(8)              |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
| 육류(12)              |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
| 화훼류(11)<br>* 절화에 한함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
| 기타(6)               |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봉웁, 누에번데기                                                     |

## Q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구분  | 분류내용                                                   |
|-----|--------------------------------------------------------|
| 제1류 | 살아있는 동물                                                |
| 제2류 | 육(肉)과 식용설육                                             |
| 제4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제5류 |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 제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
| 제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
| 제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 뒷면 계속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구분   | 분류내용                                                    |
|------|---------------------------------------------------------|
| 제9류  |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
| 제10류 | 곡물                                                      |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
| 제13류 |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
| 제15류 |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 제19류 |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제20류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 제21류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 제22류 | 음료, 알콜 및 식초                                             |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 제24류 |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

| HS번호 | 품명                                    |
|------|---------------------------------------|
| 0102 | 소                                     |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3 |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5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HS번호 | 품명                                                                                                           |
|------|--------------------------------------------------------------------------------------------------------------|
| 0206 |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br>※ 0105: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 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 0403 | 버터밀크·웅고유와 웅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404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405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
| 0406 | 치즈와 커드                                                                                                       |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409 | 천연꿀                                                                                                          |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 0504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 뒷면 계속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HS번호 | 품명                                                                                                          |
|------|-------------------------------------------------------------------------------------------------------------|
| 0506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0507 |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 0510 | 용연향·해리향·시벳과 사향·칸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물(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0601 | 인경·괴경·괴근: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 0602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0604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 0701 |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2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3 | 양파·쪽파·마늘·리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4 |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5 |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7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9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 HS번호 | 품명                                                                                                                    |
|------|-----------------------------------------------------------------------------------------------------------------------|
| 0711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714 | 매니옥·참부리·샬롯·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0804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
| 0808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 0809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뒷면 계속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HS번호 | 품명                                                                                                                                 |
|------|------------------------------------------------------------------------------------------------------------------------------------|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
| 0901 |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 0902 |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0903 | 마태                                                                                                                                 |
| 0904 | 후추(파이버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
| 0905 | 바닐라                                                                                                                                |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 0908 | 육두구·메이스 및 소도구                                                                                                                      |
| 0910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
| 1001 | 밀과 메슬린                                                                                                                             |
| 1002 | 호밀                                                                                                                                 |
| 1003 | 보리                                                                                                                                 |
| 1004 | 귀리                                                                                                                                 |
| 1005 | 옥수수                                                                                                                                |
| 1006 | 쌀                                                                                                                                  |
| 1007 | 수수                                                                                                                                 |
| 1008 |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 HS번호 | 품명                                                                                                                                                              |
|------|-----------------------------------------------------------------------------------------------------------------------------------------------------------------|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부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1 |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2 |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3 | 코프라                                                                                                                                                             |
| 1204 |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5 |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6 |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 1209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 1211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
| 1302 |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뒷면 계속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HS번호 | 품명                                                                                                                 |
|------|--------------------------------------------------------------------------------------------------------------------|
| 1503 | 라드스테아린·라드유·올레오스테아린·올레오유 및 벨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2 | 해바라기씨유·잇꽃류 또는 면실류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3 |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4 |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 1520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페액                                                                                  |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 HS번호 | 품명                                                                                                                                                                                                                                           |
|------|----------------------------------------------------------------------------------------------------------------------------------------------------------------------------------------------------------------------------------------------|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
|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 1802 | 코코아두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 1806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
| 1901 |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푸스쿠푸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날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 뒷면 계속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HS번호 | 품명                                                                                                                                                                   |
|------|----------------------------------------------------------------------------------------------------------------------------------------------------------------------|
| 1904 |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낱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계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1905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2003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 20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20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 2007 |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2009 |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2101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 2103 |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 2104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

| HS번호 | 품명                                                                                     |
|------|----------------------------------------------------------------------------------------|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
| 2203 | 맥주                                                                                     |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 2205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 2402 | 시가·셔루트·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Q3

## 농산물 가공품: 280품목

※ 밑줄 표시부분은 2023.2.2. 개정·시행된 품목임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5) |                                                                                                                                                                                                                                                                           |
|---------------------------|---------------------------------------------------------------------------------------------------------------------------------------------------------------------------------------------------------------------------------------------------------------------------|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4)          | 과자, 캔디류(양갱), 빵류, 떡류                                                                                                                                                                                                                                                       |
| 빙과류(2)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9)        |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
| 당류(3)                     |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
| 잼류(2)                     | 잼, 기타잼                                                                                                                                                                                                                                                                    |
| 두부류 또는 묵류(4)              |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
| 식용유지류(30)                 | 식물성유지류[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 면류(4)                     |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
| 음료류(18)                   |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품차),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
| <u>특수영양식품(9)</u>          |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u>영·유아용 이유식</u> , <u>특수의료용도식품</u>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u>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u>                                                                                                                                               |
| 장류(14)                    |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

|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5) |                                                                                                                                                                                                                                                                                   |
|---------------------------|-----------------------------------------------------------------------------------------------------------------------------------------------------------------------------------------------------------------------------------------------------------------------------------|
| 조미식품(9)                   | 식초(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
| 절임류 또는 조림류(5)             | 김치류(김치속,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
| 주류(11)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 농산가공식품류(14)               |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 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
| <u>식육가공품 및 포장육(12)</u>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u>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u>                                                                                                                                                                                  |
| 알가공품류(9)                  |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
| <u>유가공품(35)</u>           |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u>유함유가공품</u> |
| <u>동물성가공식품류(5)</u>        | 기타식육, 기타알제품, <u>기타 동물성가공식품</u> , 추출가공식품, <u>곤충가공식품</u>                                                                                                                                                                                                                            |
|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4)            | 로열젤리류(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
| <u>즉석식품류(17)</u>          | 생식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만두류(만두, 만두피), <u>간편조리세트</u>                                                                                                                                                         |
| 기타식품류(2)                  |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
| 장기보존식품(3)                 | 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55) |                                                                                                                                                                                                                                                                                                                                                                                                                                                                                                          |
|------------------------------|----------------------------------------------------------------------------------------------------------------------------------------------------------------------------------------------------------------------------------------------------------------------------------------------------------------------------------------------------------------------------------------------------------------------------------------------------------------------------------------------------------|
| 영양성분(3)                      |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
| <u>기능성원료(51)</u>             |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투스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타코사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뮤코다당·단백(축산물을 원료로 한 것),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대두단백, 홍경천, 빌베리, 마늘,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항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u>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u> |
| 기타(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 원산지표시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을 주원료 또는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대상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